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9-3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 사무 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03.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수정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규정 정비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6조의2, 안 제8조~안 제10조)

-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장 구성, 간사·서기 임명, 제척기준 일치
- 회의 정족수 구체화(위원 중 외부전문가위원 과반수 출석 신설)
-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
-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 삭제
- 위원 해촉 사유에 비위사실의 발생 시 당연 해촉사항 신설
- 조례로 위임한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 신설

- 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규정 정비 (안 제15조~안 제17조)
 - 상위법령과 용어 일치(연구 → 전문위원, 계약직 → 임기제공무원)
 - 인용법령 정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라.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권고사항 반영 (안 제8조, 안 제17조)
 -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의무 부과 삭제
 - 조례로 정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구비 및 여비 지급규정 삭제
-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4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 (참조 : 도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 화면 상단(전체메뉴-구청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65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 330-1386, FAX : 330-1636